

— 구미시문화예술공간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년 12월 17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02년 12월 24일

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정보실장 최 화 영

나. 제안이유

-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 조례로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, 방법과 이를 감정 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을 시에서 운영함에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일정한 종류 및 규모이상(10,000㎡) 건축물 건축 시 공연장, 전시실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 권장(제2조)
- 일정한 종류 및 규모이상 건축물 해당
 - 미술장식품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시장이 통보(제3조)
 -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4월 이내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제출(제3조)
 -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축비의 5/1000(제5조)
 -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건축비의 1/1000(제6조)

-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 미술장식의 가격, 예술성, 환경과 건축물의 조화 등을 심의(제8조, 제9조)
-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을 두고 그 운영과 회의방법을 정함.(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, 제11조
-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, 제24조의2, 제24조의3, 제25조
- 경상북도조례준칙(안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규모인 연건평 1만㎡ 이상 대형 건물로서 일정한 건축물 건축시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임.
- 본 조례는 2000. 10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번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제정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1만㎡ 이상 대형 건축물 건축시에 공동주택은 그 건축 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해야 할 금액은 건축비의 1/1000(시행령은 1/1000 이상 ~ 7/1000 이하)이고 기타 건축물은 5/1000(시행령은 5/1000 이상 ~ 7/1000 이하)로 조례로 규정하되 그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장식품에 대한 심의를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제정조례안임.
- 상위법이나 기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가결